

직 제 규 정

제정 : 2011.06.01 개정 : 2019.07.10
 개정 : 2011.11.22 개정 : 2020.03.01
 개정 : 2012.06.01 개정 : 2021.02.08
 개정 : 2012.07.22 개정 : 2021.09.01
 개정 : 2013.03.01 개정 : 2021.12.01
 개정 : 2013.10.01 개정 : 2022.09.01
 개정 : 2013.12.01 개정 : 2022.10.01
 개정 : 2014.07.01 개정 : 2023.02.15
 개정 : 2014.11.01 개정 : 2023.09.01
 개정 : 2015.06.17 개정 : 2023.10.16
 개정 : 2016.03.01 개정 : 2024.03.01
 개정 : 2016.04.01
 개정 : 2016.05.01
 개정 : 2017.02.01
 개정 : 2017.06.01
 개정 : 2018.09.13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7장 및 학칙 제14장에 의거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고 한다)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행정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1.22, 2021.12.01., 2022.09.01.>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하여 법령, 정관 및 기타 본교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11.11.22., 2021.12.01.>

제3조(사무분장) 이 규정에 의거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제4조(교직원) ① 본 대학교에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에 의한 교원과 강사 및 일반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, 조교를 두며 동법 제17조에 의한 비전임교원(명예교수, 석좌교수, 초빙교수, 겸임교수 등)을 둔다. <개정 2019.07.10.>

② 교원은 총장 외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. <개정 2012.07.22, 2019.07.10.>

③ 직원은 일반직과 기술직, 계약직으로 구분하며, 세부적인 직급 구분은 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에 의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별도로 각 직급에 임시직을 둘 수 있다. <개

정 2012.06.01., 2019.07.10.>

④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. <개정 2019.07.10.>

⑤ 직원은 분장된 업무를 담당하며, 정원은 법령 및 학교법인 민송학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⑥ 조교는 전임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며,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(부속기관, 부설연구소 포함)에 배치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[전면개정 2021.12.01.]

⑦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며, 본 대학교 강사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22.09.01.>

제2장 총 장

제5조(총장)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6조(명예총장) 법인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본 대학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부총장) ① 본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09.01.>

② 부총장은 학사 전반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8조(총장실 산하기구) ① 총장실에 총장과 부총장에 관한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비서실을 둘 수 있다.

② 비서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 또는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.

③ 총장은 효율적인 학교운영과 특별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 직속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④ 총장 직속기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22.09.01.]

제9조(총장의 직무대행) 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총장 및 부총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교법인 민송학원 이사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자가,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행정조직

제10조(대학교 본부) 총장이 통할하는 대학교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.

1. 교무처
2. 미래전략처
3. 입학학생취업처
4. 사무처

[전문개정 2022.09.01., 2023.09.01.]

제11조(대학교 본부 부설기구) ① 대학교 본부의 각 조직에 부설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 부설기구의 소관사무는 대학교 본부 기관장이 통할한다.

③ 부설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부설기구의 장을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또한 필요에 따라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: 2022.09.01.]

[중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<2022.09.01.>]

제12조(기관의 장) ① 제10조에 규정한 기관에 장을 두어 사무를 분장하게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②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. 다만, 사무처장은 참사 이상으로 보할 수 있다.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③ 각 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.

④ 각 처(단)에는 필요에 따라 부처장(부단장)을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,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할 수 있다.<개정 2021.09.01., 2022.09.01.>

⑤ 전조 기관의 팀장은 팀의 소관사무를 담당하고, 대학교 본부 부설기구의 소관업무를 담당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9.01.>

[중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<2022.09.01.>]

제13조(기관장의 임기) ① 본 대학교 교원이 겸보하는 보직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가감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9.01.>

②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자의 보직을 계승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1.12.01.>

[중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<2022.09.01.>]

제14조(교무처) ① 교무처에 교무팀을 두며, 부설 교육과정혁신센터, 교수학습혁신센터를

둔다. <개정 2023.02.15., 2023.09.01.>

② 팀에는 팀장을 센터에는 센터(실)장을 둘 수 있으며,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<개정 2023.02.15.>

③ 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[전문개정 2022.09.01.]

[중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<2022.09.01.>]

제15조(미래전략처) ① 미래전략처에 미래전략팀, 미디어팀을 두며, 부설 성과관리센터, 지역상생협력센터를 둔다, <개정 2023.02.15., 2023.09.01.>

② 팀에는 팀장을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02.15.>

③ 팀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02.15.>

[본조신설 2022.09.01.]

[중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<2022.09.01.>]

제16조(입학학생취업처) ① 입학학생취업처에 입학학생취업팀을 두며, 부설 장애학생지원센터, 학생생활상담센터, 인권센터, 사회봉사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, 취업정보실을 둔다. <개정 2023.09.01.>

② 팀에는 팀장을 센터(실)에는 센터(실)장을 둘 수 있으며,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09.01.>

③ 팀장 및 센터(실)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09.01.>

[전문개정 2022.09.01]

[중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<2022.09.01.>]

제16조의2(정책기획단) <삭제 2022.09.01.>

제17조(취업지원처) <삭제 2023.09.01.>

[전문개정 2022.09.01]

[중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<2022.09.01.>]

제18조(사무처) ① 사무처에 사무팀을 둔다.

②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,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③ 팀장은 부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[전문개정 2022.09.01.]

[중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<2022.09.01.>]

제4장 학과 [본장신설 2022.09.01.]

제19조(학과) ① 본 대학교에 학칙 제4조에 의거 학과를 두며,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.

② 학과에는 사무실을 두고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 다만 필요에 의거 2개 이상의 학과 사무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학과 및 2개 이상의 학과가 연합하여 산학협동 또는 그 학과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특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팀을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

④ 학부(과)의 교육을 위하여 경우 학과 소속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, 기구의 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[본조신설 2022.09.01.]

[중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<2022.09.01.>]

제5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

제20조(부속기관 및 부설기관) ①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두고, 각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.

1. 국제교육원 <개정 2023.09.01.>
2. 평생교육원 <개정 2023.09.01.>
3. 도서관 <개정 2023.09.01.>
4. 신문방송국
5. 학생생활관(기숙사)
6. <삭제 2013.03.01.>
7. <삭제 2013.03.01.>
8. 보건진료소
9. <삭제 2023.09.01.>

② 제1항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둘 수 있으며, 팀에는 팀장과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부주사 이상의 직원을 보한다. <신설 2022.09.01.> <개정 2023.09.01., 2023.10.16.>

③ 제1항의 부속기관의 업무는 제10조 대학본부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을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3.09.01.>

[중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<2022.09.01.>]

제21조(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단 부속기관)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단장을 둘 수 있다,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참사 이상으로 보하며,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. 이 경우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22.09.01.> <개정 2024.03.01.>

③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팀을 두고 팀장과 직원을 두며 팀장은 부주사 이상으로 보한다. <개정 2014.07.01., 2018.09.13., 2022.09.01.>

④ 산학협력 관련 부속기관으로 다음의 각 호의 기관을 두고 각 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부주사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21.12.01., 2022.09.01.>

1. 창업보육센터

2. <삭제 2012.06.01.>

3. <삭제 2024.03.01.>

4. <삭제 2020.03.01.>

5. <삭제 2024.03.01.>

6. <삭제 2024.03.01.>

7. 연구소

가. <삭제 2016.03.01.>

나. <삭제 2016.03.01.>

다. <삭제 2016.03.01.>

라. <삭제 2024.03.01.>

⑤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원대학교 「산학협력단 정관」에 의한다. <개정 2011.11.22., 2021.12.01.>

⑥ 전항의 부속기관 이외에 산학협력단 산하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단 및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사업단장 및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. <신설 2022.09.01.> <개정 2022.10.01.>

[중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<2022.09.01.>]

제22조(임무 및 임기)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장의 임무 및 임기는 제11조,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3조(직제와 운용)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직제와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6장 학교기업

- 제24조(학교기업) ① 본 대학교에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3.03.01., 2019.02.01., 2022.09.01.>
- ② 학교기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3.03.01.>

제7장 보칙 [본장신설 2022.09.01.]

제25조(예비군중대) 예비군중대에 중대장과 참모를 둘 수 있으며, 중대장과 참모는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22.09.01.]

제26조(위원회) ① 대학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2.09.01.]

제27조(연구위원) 대학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서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한다.
[본조신설 2022.09.01.]

제28조(기타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22.09.01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직제 및 직종변경) 법인정관의 직제변경에 따라 기관장 및 팀장의 임면자격을 변경하고 직원의 직종변경에 따라 일반직, 기술직으로 구분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